



미국 장애인법 및 재활법 504 조에 따른 민원 및 고충 신고 절차

민원 및 고충 신고 절차는 1990 년 미국 장애인법("ADA") 및 1973 년 재활법 504 조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확립되었습니다. 이것은 다운니시에 의한 서비스, 활동, 프로그램 또는 혜택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주장하는 민원이나 고충을 제기하려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운니시의 인원 정책에서 장애 차별에 의한 고용 관련 민원이 다뤄집니다.

다운니시는 접근가능한 프로그램,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우려와 불만을 듣기를 바랍니다. 시민은 정식 고충의 접수 없이도 의견이나 우려 또는 불만을 통화로 알릴 수 있습니다. 정식 고충 신고는 ADA/Section 504 조 코디네이터인 바니아 드 로자스(Vaniah De Rojas)이나 담당 피지명자에게 연락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시민이 정식 고충의 접수를 원한다면, 고충 절차 및 양식이 제공됩니다. 고충은 서면으로 하며 고충 제기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 정보와 같은 주장하는 차별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개인 면담이나 민원의 녹화와 같은 민원 제기의 대안 수단은 요청 시 장애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추가의 편의가 필요하면, ADA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.

민원 신고는 민원인 및/또는 그의 피지명자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적어도 주장하는 위반 발생 이후 60 일까지 다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:

ADA/Section 504

Coordinator City of

Downey

11111 Brookshire Avenue

Downey, CA 90241

이메일: ADACoordinator@downeyca.org

전화: (562) 299-6619

팩스: (562) 923-6388

민원 수령 후 15일 이내에 ADA/섹션 504 코디네이터 또는 그 피지명인이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민원과 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. 해결책을 찾기가 힘든 경우 ADA/섹션 504 코디네이터는 가능한 해결 방안을 민원인과 논의할 것입니다. ADA/섹션 504 코디네이터 또는 그 피지명인 간의 최초 논의 후 15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큰 글씨 인쇄물,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와 같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서면으로 응답할 것입니다. 응답을 통해 다운니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원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(해당될 경우)을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.

만약 ADA/Section 504 코디네이터 혹은 그 피지명자의 응답이 사안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민원인 및/또는 그 피지명자는 응답의 수령 후 15 일 이내에 다운니시의 부매니저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운니시의 부매니저 또는 그 피지명자는 항소의 수령 후 15 일 이내에 민원인과 만나 민원 내용과 가능한 해결을 논의합니다. 이 모임 후 15 일 이내에, 다운니시의 부매니저 또는 그 피지명자는 서면 그리고 적절한 경우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민원에 대한 최종 해결을 응답합니다.

ADA/섹션 504 코디네이터 또는 그 피지명인이 접수한, 서면으로 된 모든 민원은 다운니시 부매니저(Assistant City Manager) 또는 그 피지명인에게 호소하는 것이며 이 두 공직자로부터의 응답은 최소 3년간 다운니시가 보관합니다. 다운니시의 ADA/504 자체 평가 및 전환 계획 사본은 웹 페이지 www.downeyca.org/transitionplan의 시 ADA 전환 계획(City's ADA Transition Plan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